

의안번호	2200152
의 퇴 인	박희승 의원
회 답 일	2024. 07. 25.
추 계 번호	24A158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u>혁신도시·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u> (제1항) ※(현행) 혁신도시 → (개정안) 혁신도시·산업단지	재량규정
3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u>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개정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제2항) － <u>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등 우선적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제4호 신설) ·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u> (제5항) ※(현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 →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의무규정
4	안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함(제3항) － 이 경우 <u>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u> (후단 신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제1항(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3	안 제26조제3항(혁신도시의 지정) 후단 신설	

1.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¹⁾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신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동 혁신도시에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혁신도시 지원을 위해 기편성된 예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사업으로는 ‘혁신도시 건설지원’이 있으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이 있음
 - 2024년도 예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3억 5,000만원이 정책연구비(260-02)에 포함되어 있음

1)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표 1] '혁신도시 건설지원(5538-301)' 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혁신도시 건설지원(세부사업)	6,841	4,908	4,520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내역사업)	2,000	2,000	2,525

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부사업으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이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²⁾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임차료 등을 보조하는 사업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국비 지원 비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

- 다만, 시행령 제25조제2항³⁾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므로 향후 신규로 지정될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인구감소지역에 신규로 지정될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